

■ 선행 교육 금지법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문

# “선행교육은 법률로 규제해야 합니다”

일시: 2012. 7. 25. 11시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교육 목적의 달성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 관련 기관들의 비교육적인 선행교육 활동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교육”이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육과정(이하 ‘국가 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예·체능, 기술·가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연습이 아닌<sup>1)</sup> 학습을 말한다.
3.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sup>2)</sup>,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그리고 학습지관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앞서거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up>3)</sup>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과정도 이와 같다.

---

1) 여기서 연습이란 다음시간(내지 다다음시간)에 학습할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 법에서 규제한다.  
3)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유치원 및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재량권)을 갖는 경우(사립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영어수업 편제, 자사고 속진형 교육과정 문제)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초·중·고등학교는 각종 시험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이나 자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학은 적성검사, 구술고사, 논술고사 등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지관련기관은 공통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입학 이전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이를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sup>4)</sup>
- ⑥ 제5항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있지 않은 과목<sup>5)</sup>을 학습하려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선행교육은 시수를 제한함으로써 규제한다. 이 경우 시수 제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up>6)</sup>

### 제5조(학교의 장의 임무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선행교육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sup>7)</sup>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국 단위 및 시·도별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 및 대책

4) 학원 등에 대한 규제를 중학교 이하에서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논의 결과 선택형교육과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재량 편성·운영 등의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 진도 대비 차원이 아닌 수능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입학 이전의 학생에 대하여만 규제하기로 함.

5) 영어, 한자 등

6) 제1안임(제1안에 대한 대통령령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등의 모든 선행교육에 대하여(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시수로 제한-학습노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제2안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 등의 조기교육에 대하여는 학원법, 아동인권법(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등에서 별도로 규제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는 것.

7) 사립학교법 제70조(보고·조사등)

방안을 정리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 학년 확인의무 등)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은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강생의 학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정위”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정위는 직권으로 또는 시정요구를 받아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 ③ 교정위는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하여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 등의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한다.
- ④ 교정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정요구 등)

-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시민단체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교육이 필요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시·도교육청 교정위”라 한다)에 즉각적인 조사 및 시정요구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시민단체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교정위에 즉각적인 조사 및 시정요구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시민단체는 대학이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육과학기술부 교정위”라 한다)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요구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처분)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정위의 조사 결과 교육 관련 기관이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지시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가 제1항의 시정지시 이행의 거부 또는 반복적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이사회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원 등이 제1항의 시정지시 이행의 거부 또는 반복적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경우 등록말소 및 교습의 정지,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지 및 교습의 정지,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과외교습의 중지, 학습지관련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및 학습지관련기관의 사업자 등록 말소
2.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 제12조(적용의 배제)

- ① 이 법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 교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은 학생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안】 8)

## 1. 목적

: 이 영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학원 등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선행교육의 기준(법 제4조 제6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지관련기관이 행하는 미취학 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있지 않은 과목<sup>9)</sup>을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주당 12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선행교육방지 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항<sup>10)</sup>(법 제5조 제3항)

## 4. 포상금 지급사유 등(법 제6조 제4항)

: 선행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sup>11)</sup>

- 1)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교과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이를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2)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8)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제안이므로 시행령의 형태가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주요 내용 위주로 작성함.

9) 영어, 한자 등

10) <참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11) 학원법 제16조,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 4, 시행규칙(교과부령)제17조 참고

## 5.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교정위)의 구성 • 운영 • 권한 •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 8조 제4항)

: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교정위)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 구성

- 1)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교정위)를 설치한다.
- 2) 교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 관계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3) 교정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교육 기관 관계자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 도교육청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시민단체 추천자 1명 이상
  3. 학부모 2명 이상
  4. 교원 2명 이상
  5. 사교육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6. 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 전문가 2명 이상
- 4) 교정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교정위와 시 • 도교육청 소속 교정위로 나눈다(법 제8조 제1항).

### (2) 권한(절차)

- 1) 학교의 경우 : 교정위는 학교가 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교정위에 시정 및 관계자 징계 요구에 의하여 조사한다.
- 2) 학원 등의 경우 : 교정위는 학원 등이 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또는 학생 등에 의한 시정요구 등이 있는 경우 조사 • 판단한다.
- 3) 교정위는 조사결과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 및 징계요구(보고)를 한다.
- 4) 교정위는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등의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할 수 있다.